

6. 제출요구 서류 목록

공사 설계도

시방서

사업계획 확정서류

감정평가 및 보상 서류 (보상금 지급대장 포함)

입찰업체 선정 서류

착공 관계 서류

하도급 관계 서류

기타 필요서류 (추가요구시)

7. 현황 보고

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현황보고 - 건설과장

8.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

관계 공무원 : 건설과장, 재무과장

공사 관계자 : 추후 요구

【 8 】 주내-가납간 도로확포장사업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견

제의년월일 : 1994. 10. 19.

제 의 자 : 의 장

제안이유

주내-가납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

본회의의 의견을 채택코자 함.

주요골자

◦ 조사기간 : 1994. 10. 14 ~ 10. 18

◦ 조사 대상기관 : 건설과, 재무과

◦ 조사결과 : 별첨 결과보고서

주내-가납간 도로확포장사업 조사 결과 보고서

1. 조사의 목적

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시공상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는 주내-가납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공사의 부실화를 막아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려는데 있음.

2. 조사기간 : 1994년 10월 14일 ~ 10월 18일 (5일간)

3. 조사 대상기관 : 건설과, 재무과

4. 조사반

| 조사반장 | 조 사 반 원 | 보 조 직 원 | 비 고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|
| 김 혜 한 | 권선안 안광순 우충국 한상익 | 홍영섭 | |
| | 이은선 김재현 | | |
| | 정명훈 | | |

5. 조사대상 : 주내-가납간 도로확포장 사업의 추진실태

6. 주요 조사 실시 내용

가.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중 하도급에 관한 사항

◦ 건설업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의 통지기간 준수여부

◦ 건설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계약사항 이행여부

◦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여부

◦ 하도급 업체의 재무구조 상태 및 공사능력 여부

나. 용지보상에 관한 사항

◦ 용지보상금 지급상황 및 보상금 평가의 적정여부

다. 시공에 관한 사항

◦ 흙쌓기 작업의 제규정 이행 여부

◦ 설계시 지형과 지역실정에 맞게 설계 되었는지 여부

◦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감독사항

라. 자재관리 및 기타사항

◦ 관급자재의 관리상태

◦ 공사구간의 안전대책 확보 상태

7. 조사 결과

가.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

(1)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 중 하도급에 관한 사항

◦ 건설업자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

하고자 할때에는 건설업법 제22조에 의거 해당 업종의 전문 건설업자에게

하도급 하고 이를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15일 이내에 공사 발

주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

◦ 공사 도급업자인 신근대 종합건설은 94. 6. 7 도급계약 체결후 공사의 첫

단계인 세부축량과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포장공사 및 토공부분, 우. 오수

공사 등을 하도급 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하도급 계약 사항을 법에서 정한 15일이 상당기간 지난후에 통지한 바 이는 양주군이 공사 발주자로서 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자의 역할을 다 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치 않은 것이며,

- 이와 같은 감독 소홀로 인하여 하도급 업체의 재무구조나 시공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없이 공사가 진행 될 경우 공사의 부실화는 명약관화할 것 이므로 이후 공사 완공시까지 철저한 감독으로 부실화 요인을 사전에 제거,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기 바람.

(2) 용지보상에 관한 사항

- 사업 시행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등의 취득이 필요한 때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토지는 물론 정착물에 대해서도 이를 정확히 평가 보상하여야 함에도 일부 보상에서 누락된 것이 있는 바 이들 누락된 정착물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 엄정한 평가를 거쳐 보상토록 하기 바라며.
- 현재 토목공사가 약 16%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음에도 미보상 건수 28건 중 공시송달, 공탁 18건을 제외 하더라도 계속 협의중인 6필지가 있는 것 등은 선보상 후시행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조속한 시일내 보상 완료토록 하기 바람.

(3) 시공에 관한 사항

- 성토 부분의 흙쌓기는 최소한 15cm 이상의 표토를 제거한 후 환토하여야 하나 일부 구간에서 전혀 표토제거를 하지 않거나, 흙쌓기 작업시 성토에 쓰이는 흙은 초목류, 구근, 유해 초목등을 완전 제거함은 물론 한 층의 두께가 30cm일 때마다 지반다짐을 실시 함으로써 지반침하를 방지하여야 함

에도

- 이를 이행치 않음으로써 공사의 부실화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보완대책을 강구하기 바람.

(4) 자재관리 및 기타사항

- 관급자재로 공급된 철근 163t과 시멘트를 공사현장의 지상에 그냥 방치 함으로써 녹이 슬거나 이물질이 붙는 등 보관 상태가 극히 불량한 바 이를 시정토록 하기 바라며
- 일부 공사 구간의 배수 불량으로 우천시 유수가 도로부분에 고여 있어 통행 차량의 사고는 물론 야간 통행차량의 사고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 강구
- 공사 완공시 유양 국민학교와 접한 부분의 빈번한 차량 통행으로 발생되는 소음으로 학교 수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방음벽 및 신호등 설치 등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.

【 9 】 제29회의회(임시회)의사일정

| 년 월 일시 | 차수 | 안 건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|---|
| 94. 10. 8(토) 10 : 00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개회식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사회 : 의사계장 ◦ 부군수, 실과소장 참석 |
| | 1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제29회의회(임시회)회기결정의건 2.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증개정조례안 3. 양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 조례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의장제의 ◦ 제안설명: 김재현 의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, 답변, 의결 ◦ 제안설명: 재무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|